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6고합25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미성년자의제강간

피 고 인 A

검 사 이진순(기소), 진인동(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안팍
담당변호사 박재한

판 결 선 고 202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9. 28.경 피해자 B(여, 13세)이 SNS 'X'에 '조건만남을 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8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룸카페 58번방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성매매 대금 7만 원 및 담배 5갑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고,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6) 및 붙임자료(증거목록 순번 4, 17 내지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행은 그 자체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성매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인한 부작용이 커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대가로 성행위를 하였고, 이는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채희인 _____

 판사 김아름 _____

 판사 김상훈 _____